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남북교류협력 추진협회의의 위원 임명권자 변경〉

■ 김준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07호)

2025. 9.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사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III . 검토의견	2
------------------	---

※ 참고자료

1.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 구성 현황	6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준형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 2025. 6. 13.
3. 회 부 일 : 2025. 6.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 임명권자를 국무총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 협의회의 업무는 통일부장관이 총괄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위원장 또한 통일부장관이 맡고 있어 국무총리가 위원을 임명·위촉함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임.

아울러 유사한 성격을 가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 임명권자를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 주체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법령 간 정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하는 것임(안 제5조 제3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국무총리</u> 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7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이 중 1명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1. 2. (생략) ④ ~ ⑥ (생략)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통일부장관</u> 이----- -----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¹⁾하여 설치된 심의·의결기관으로서,²⁾ 협의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참고자료] 참조

회 위원을 위원장인 통일부장관이 아닌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협의회 구성 주체(국무총리)와 운영 주체(통일부장관)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협의회 구성 주체와 운영 주체를 일치시키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 협의회 구성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두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1990년 8월 1일 법 제정 당시 위원장인 국토통일원장관이 당시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정³⁾되어 있어 위원에 대한 임명권한이 국무총리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임.

이후 1998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 전부개정⁴⁾으로 독립된 행정각

3) 「정부조직법」 [시행 1989.12.30.][법률 제4183호, 1989.12.30., 일부개정]

제26조(국토통일원) ① 국토통일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고 통일의 방안과 통일의 제반정책 및 국토통일에 관한 홍보선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토통일원을 둔다.

② 국토통일원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4) 「정부조직법」 [시행 1998.2.28.][법률 제5529호, 1998.2.28., 전부개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재정경제부
통 일 부
외교통상부
법 무 부
국 방 부
행정자치부
교 육 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 립 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 경 부

부인 통일부로 변경되었으나,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작업이 상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 또한, 협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살펴보면, 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전반을 협의·조정하고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남북교류협력이라는 한정된 분야의 정책적 판단을 수행하는데 그치고,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보유한 인사로서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정책 연계 및 실행력 확보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계 확립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도 위원의 임명권자를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위원 임명 또는 위촉의 주체를 위원장인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권한의 주체를 일치시키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부는 실제 협의회 운영 전반은 통일부장관(위원장)이 관할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의견임.

□ 한편,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공공외교법」에 따라 구성·운영되

노 동 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제28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는 공공외교위원회,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등은 그
위원장인 외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통일부장관이 각각 그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5) 「공공외교법」 제8조(공공외교위원회)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외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③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참고자료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 구성 현황 '25. 7. 기준]

☐ 정부위원 : 16명 (위원장 및 위원 16명)

직위 및 성명	직위 및 성명
통일부 장관 (위원장) 정동영	법무부 차관 이진수
통일부 차관 김남중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용호성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강형석
국가정보원 2차장 김호홍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김영수	보건복지부 1차관 이스란
기획재정부 1차관 이형일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구혁채	해양수산부 차관 김성범
외교부 1차관 박윤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노용석

☐ 민간위원 : 5명 (기존 8명 중 3명 공석 상태)

성명	주요 경력	분야	임기
서은숙 (’68)	(現)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現)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 (現) 신용보증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기금 운용	’24.12.19.~’25.12.18. * (최초) ’22.12.19.~’23.12.18. (연임) ’23.12.19.~’24.12.18. (연임) ’24.12.19.~’25.12.18.
명수정 (’70)	(現)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 산림청 박사후연구원 유엔기후변화협약 정부 자문단	개발 협력	
김형석 (’65)	(現) (사)통일생각 고문 통일부 차관(’16.6~’17.6)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15.4~’16.6)	사회 문화	’25.4.26.~’26.4.25. * (최초) ’23.4.26.~’24.4.25. (연임) ’24.4.26.~’25.4.25. (연임) ’25.4.26.~’26.4.25.
홍순직 (’62)	(現)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남북 경협	
장만순 (’59)	(現)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 (現) 시도지사협의회 통일미래특별위원장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17·18대)	*시도지사 협의회 추천문	’25.4.26.~’26.4.25.

※ 임기 만료(’25.6.20.)로 공석인 3명은 위촉 절차 진행중

문의처

02)6788-5267